



뉴저지 법에 따른 성희롱 보호 제도에 대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 1 뉴저지 차별금지법(LAD)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한 형태인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장소는 주거 지역, 직장 및 공공 시설이며 이때 공공 시설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로 회사, 식당, 학교, 여름캠프, 의료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 2 성희롱에는 언어적인 괴롭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설적인 언어나 모욕적인 견해 표출, 원치 않는 손길과 같은 신체적 괴롭힘, 포르노 이미지, 만화,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시각적 괴롭힘이 그 예입니다.
- 3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로 대가성형과 적대적 환경형입니다. 대가성 성희롱은 직장 내 승진, 아파트 임대, 식당 출입과 같은 혜택에 대한 대가로 성 접대를 제안하거나 성 접대를 거부했을 시 해고나 퇴출 등과 같이 부정적 조치로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대적 환경형은 피해자가 성별에 근거하여 원치 않는 심각한하거나 만연한 괴롭힘 행위를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고용주, 주거제공자 또는 공공 시설 측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동료가 부적절하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상사나 고용주가 보는 앞에서 자세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관리자가 냉장고를 수리하는 대가로 성 접대를 요구한다든지 멈추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섹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부른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5 고용주, 집주인, 공공 시설 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성희롱에 대해 고발한다든지, 차별금지법에 따라 기타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 시도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고발 사항이 있으신 경우 NJCivilRights.gov 페이지 방문 또는 973-648-270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뉴저지 법무장관집무처(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JCivilRights.gov

DIVISION ON
CIVIL RIGHTS